

#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55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7. 12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7. 12
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1999. 7. 21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### 2. 개정사유

- 0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이바지코자 함.

### 3. 개정골자

- 0 시장사용권 중도해지시 잔여기간 사용료를 반환(안 제8조)
- 0 위탁징수 계약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(안 제12조제3항)
- 0 계약보증금을 20/100에서 10/100으로, 연대보증인 수를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(안 제13조)
- 0 위탁징수자 요건을 시장소재지 읍면 거주자에서 군관내 거주자(안 제14조제1호)
- 0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자의 과태료를 면한액의 5배 이내에서 20/100 가산(안 제18조제2항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0 본 조례안은 1970. 12. 31 제정된 이후 1997. 7. 10 까지 9차례의 일부 개정이 되었지만 그간 시장의 현대화 등 여건의 변화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시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함이며, 각 조항의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제8조 및 제13조의 사용료반환 및 계약보증금의 20/100에서 10/100으로 완화 시킴에 따른 이자수입등 균세입의 차질은 없는가
- 답 : 사실상 계약보증금의 완화로 이자수입에는 다소간 감소차액이 있겠지만 규제완화 측면에서 개정함.
- 문 : 제18조의 과태료 부과에 있어 당초 부정확한 방법으로 징수면한액의 5배 이내에서 20/100으로 완화한 것은 너무 차액이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
- 답 : 차액은 크지만 인근 시군의 예를 조회하여 타시군과 균형을 맞도록 조정한 것임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1999. 7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